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2차 토론회>

‘친일’ 문제의 인식

발표 : 김 민 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송 경 아 (소설가)

때 : 2004년 11월 4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친일’ 문제의 인식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I. ‘과거청산’과 ‘친일문제’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거청산은 크게 두개의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식민지하의 친일문제로 매국행위와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협력행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그 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동체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분단과 한국전쟁, 권위주의정권하에서 일어난 인권문제이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불법행위로 인해 일어난 피해문제로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명예회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한을 풀고 국가와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죄를 다시 환기시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여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이란 역사해석이나 평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¹⁾

그러나 ‘친일문제’는 과거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사안과 유사할 수 있으나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과제를 안고 있다. 책임 추궁이라는 측면에서도 친일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다른 형태의 책임 추궁의 성격도 갖고 있다. 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거의 사망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책

1) 과거청산의 방법에 대해 역사가 볼프손(Welffsohn)은 4W(Wissen[알], Wert[가치], Weinen[슬퍼함], Wollen[의지])를 제안한 바 있다.(송충기, 「전후 독일의 탈나치화와 재교육」 대구사학회 2002년 학술대회 「과거의 부담과 대면하기」, 2쪽.) 즉 과거청산이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하고, 그 행위를 악한 것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하고, 희생자를 위해 최소한 상징적으로 슬퍼해야 하며, 다른 좀더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것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책임 규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방식을 통해 과거청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무엇이 일어났는가(진상 규명) 2) 그때 일어난 일이 옳았는가 틀렸는가(가치) 3) 피해자의 슬픔을 이해하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슬퍼함) 4)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지) 5) 일어난 일에 누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책임 규명)”

임을 물을 것인가, 묻는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친일문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학습효과를 얻을 것인가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난 해 말 이후부터 몇 가지 우연적인 사건을 계기로 친일문제가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문제가 사회화(대중화)되고 정책과제화되는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많은 사안들이 대중화될 때, 극단적으로 단순화되면서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무시되거나 아예 외면당함으로써 인간행위에 대한 이해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반드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친일문제가 안고 있는 복잡한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정치권의 문제와 결부시켜 특정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친일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최악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누구누구 아버지가 면서기를 해서, 순사여서, 금융조합 서기를 해서 친일파더라’는 식의 황색저널리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폭로성 기사와 논리가 인터넷 매체를 타고 횡행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처럼 친일 문제가 줄지에 홍신소 직원을 동원해서 족보 캐는 식의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경우도 있다.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일 수도 있고, 친일파 문제가 대중화되면서 빚어지는 시행착오의 과정일 수도 있고,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것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친일문제에서 이런 식의 논의는 철저하게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가 이런 식으로 전개된 데에는 친일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친일파 하면 이완용, 이완용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친일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완용이 왜 독립협회 초대회장에서 ‘일한병합’ 조약 체결자로까지 변신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지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그렇다. 학교 선생에서 만군의 장교로,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개발독재자로 변신했던 이유를 그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무력한 것은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친일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논자들의 지적처럼 도덕적주의적 역사관은 사태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

고, 대중의 카타르시스에는 일조할 수는 있으나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주장 역시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실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II. ‘친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구조와 주체, 행위와 책임의 문제

친일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속에는 친일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차원의 질문이 담겨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잠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사건이 일어났다. 참사가 일어나자 언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당사자인 김씨(실직한 가정으로 정신질환)
- B. ‘승객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기관사 자신의 피신에만 급급한 무책임한 행동’
- C. 사령실의 상황 판단 미숙과 안이한 근무태도
- D. 경영합리화와 비용 감축으로 2인 승무제가 1인 승무제로 변경, 상황실의 인원 부족²⁾
- E. ‘불쏘시개통’의 전동차와 지하철역 구내의 건설구조 시스템³⁾
- F. ‘이번 사고의 진정한 범인은 안전 조치로 인해 늦어지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조급성과 이런 조치를 규제나 불편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과 생활문화에 있다’⁴⁾

A~C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주체)의 문제에서 추궁하고 있다. 다만 B와 C

2) 『한겨레신문』 사설

3) 『중앙일보』 사설 2003년 2월 19일

4) 원희복 지방자치부 차장, 『경향신문』 2003년 2월 26일

는 관리상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D·F는 사회(구조)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즉 IMF로 승무원을 감축하려 했을 때,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른바 고통분담)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냈더라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단지 각자가 알아서 버티도록 강요받았다. F는 좀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조급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서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참사에 대해 우리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그런 점에서 A 역시 마찬가지이다. A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 ... IMF ← 실직 ← 삶의 무게와 정신 질환 ← 사회 불만 ← 방화. 그렇다면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여기서 논의를 좀더 진전시킨다면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과 책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인(주체)과 사회(구조)를 분리해서 사고하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실상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과 사회가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다.(관계성의 문제이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때 괄호단기와 괄호열기의 훈련이 필요하다.⁵⁾ 개인의 책임을 말할 때는 사회 문제는 괄호 안에 넣어 두어야 한다. 반대로 사회 문제를 말할 때는 개인의 문제를 괄호안에 넣어두자. 그런 다음 괄호를 벗겨 보자.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더 나은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곧 책임 문제에서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행위의 궁극적인 책임은 행위를 '결단'한 당사자에게로 귀속된다. 만일 책임을 사회(구조)로 돌린다면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만

5)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해선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21』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그는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식과 윤리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할 때는 인식이, 실천과 책임을 규명할 때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천황제와 천황의 책임에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황 개인이 아니라 그 구조가 문제고,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천황 개인을 인간적으로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구조론적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책임은 괄호 안에 넣어야만 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국가주의 이론과 심리’, 또는 그 후의 다양한 천황제 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물을 경우 그 괄호를 벗겨내지 않으면 안된다.”(153쪽)

“우리는 전쟁책임의 문제를 그저 선악의 도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인식이 윤리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윤리적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론적(구조론적) 파악에서 개인은 구조의 항목에 놓일 뿐 주체일 수 없다. 주체는 실천적(윤리적인) 위상에서만 나온다.”(171쪽)

책임을 묻는다면 그 행위를 낳게 한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구조의 문제로 돌리려는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둘째, 참사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회로만 돌릴 수도 없다. 각자가 저야할 책임의 몫이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결해야할 방식 또한 여러 층위로 나뉠 수 있다. 행위의 유형에 따라 책임의 유형도 나누어진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형이상학적 책임이 있다.⁶⁾ A가 법률적 책임의 당사자라면, B는 실무상의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법적 책임의 당사자이고, C는 관리 감독상의 법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겐 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성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성찰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동일시할 경우, 우리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저야할 주체와 도덕적 책임을 저야할 주체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결국은 책임의 주체를 사실상 소멸시키는 오류를 종종 범하곤 한다. ‘모두가 죄인이다’는 말은 곧 ‘모두가 무죄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⁷⁾

6) 칼 야스퍼스, 『責罪論』(‘우리에게 죄가 있는가-독일의 자기비판’이라는 제목으로 1948년에 잡지 <<유럽>>8호에 실림) 가라타니가 정리한 것을 요약해서 인용한다.

1) 형사상의 죄이다. 이것은 전쟁범죄-국제법 위반을 의미한다.(뉘른베르크재판과 도쿄재판) 2) 정치상의 죄다. 이것은 ‘국민’ 일반과 관계된다. “근대국가에서는 누구나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적어도 선거 때 하는 투표 기권을 통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정치적으로 물어지는 책임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누구든 이를 피할 수는 없다.……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나빠지면 정당한 근거를 들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에서는 그러한 변호가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야스퍼스가 말하는 ‘죄’는 ‘책임’이라는 말로 바꿔놓을 수 있다.여기서부터 몇 가지 문제가 나온다. 즉 과거즘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혹은 ‘재앙을 간파하기도 하고, 예언하고, 경고도 했다’는 말들을 하지만 그로부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또 행동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런 말은 정치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3) 도덕상의 죄를 말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무죄지만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는 경우다. 가령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가, 반대해야 할 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할 때가 그렇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죽을 지도 모르니까 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해야 할 일(당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재권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독재권력만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을 지지했거나 혹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4) 형이상학상의 죄를 말한다. 강제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유대인들은 어떤 죄책감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이유에서, 마치 자신이 그들을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죽은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이러한 구별은 불가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책임’으로 동일시되고, 결국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후에 일본 황족 출신의 수상이 라디오에서 ‘일억총참회’를 주창했던 때가 그런 것이다.(『윤리21』, 131-133쪽.)

7) 이영훈교수의 위안부 발언 과문에서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동일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류를 범했다는 데 있다. 즉 일본제국의 범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재의 일본 정부와 위안소를 드러내던 한국인 병사의 책임을 동일시한 것이 잘못이었다. 또 한가지 친일문제에 대한 이영훈교수의 발언에 담긴 역사의식도 문제이다. 즉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교수는 도덕주의적 역사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공리주의적 역사관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도덕주의적 역사관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

2. 친일의 유형과 책임의 중층성

이제 친일의 문제로 들어가 보자. 친일행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반민족행위 - 매국, 독립운동 탄압(군, 경찰, 밀정) 등
- ② 반인륜행위 - 고문, 학살, 위안부 제공 등
- ③ 부일협력행위 - 식민통치에 협력한 행위(근대화 문제와 결부), 침략전쟁에 동조한 행위(정도의 문제제기, 자발성과 강제의 구분 문제) 등

하나의 행위라 하더라도 여러 유형을 다 포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책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17대 국회에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정할 때, 행위 이외에 지위 규정을 넣은 것도 이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다음은 친일(행위)의 유형과 책임에 대한 관계를 잘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다.⁸⁾

규정		친일반민족자		부일협력자	규정	예시	규정제한
책임의 범위 구분		형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목적적 친일행위자	직업적 친일행위자	○	○	○	친일 반민족 자	항일운동세력고문·살해자 / 밀정 / 매국행위자 / 중추원 참의 등	당연 해당 (제한 없음)
	자발적 친일행위자	△	○	○		주임관(고등관) 이상 관리·군인	
결과적 친일행위자	수동적 친일행위자		○	○		사회 각 부문에서 식민통치, 황민화운동, 침략전쟁을 선전·선동한 자 등	선택 해당 (적극활동 자로 제한)
	기능적 친일행위자			○	부일 협력자 판임관 이하 관공리 등		

러나 그가 주장한 공리주의적 역사관 속에는 '좋고'(good) '나쁨'(bad)만 있지 '옳고' '그름'은 없다. 인간의 행위,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가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옳고 그름이 배제된 역사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국에는 부당한 체제를 인정하는 지배계급의 역사관으로 전략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8) 한상구, 200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발제문)

여기서 ①과 ②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옳지 못한 행위라고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③의 부일협력행위이다.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근대화가 좌절되고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 근대화가 주도되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식민지 지배체제가 장기화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 부일협력행위는 친일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어려운 지점에 해당하기도 하다. 복거일의 친일제파론이나 안병직의 일상사론, 윤해동의 회색지대론이 모두 이 지점을 두고 친일청산논쟁에 반대, 또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복거일의 주장부터 보자.⁹⁾ 그는 친일 행위를 규정하는 작업에서 핵심적인 논점은 ‘조선 총독으로부터 식민 통치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만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친일 행위는 강요된 것이었기에,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아닌 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십수 년 전부터 ‘일제하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은 모두 친일파다. 따라서 모두가 무죄다’는 주장을 펴면서 친일파를 변호하던 그가 좀더 세련된 어법으로 ‘공범론’을 펼치고 있다.

그가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에는 중요한 문제제기가 담겨 있다.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에만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사회(시대적 제약)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부당하다. 구조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시대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은 제약된 구조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동기와 관계없이 묻게 된다. 만일 복거일식의 주장대로라면 독립운동을 한 조선인들에 대한 고문과 여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서 ‘중군 위안부’로 만든 행위만을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한 행위 역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선택일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상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만다.

다음으로 독일의 일상사를 친일 문제에 적용한 안병직의 주장을 보자.¹⁰⁾

일상사 연구는 기존의 나치즘 연구가 나치즘의 억압성과 대다수 국민들의 체제순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치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정

9) 복거일, 2003, 『죽을 자들을 위한 변호-21세기의 친일문제』, 들린 아침.

10) 안병직, 2002, 「과거청산과 역사서술-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제177집.

권의 강압적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방식에 있다고 하였다. 즉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사생활에 몰입한 것이 나치의 집권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식민지에 도입한 안병직은 ‘어떻게 35년간 일제식민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는가’를 물으면서 한국인들이 그런 대로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일상의 삶에 나름대로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일상적 삶의 긍정적인 면모에 주목하는 역사서술을 일제시대를 가장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친일청산 문제와 직결된다. 즉 친일행적의 규명과 심판을 통해 식민지 시대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 30여 년이 넘게 지속된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책임을 소수 친일세력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독일의 일상사 연구에 대한 그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 그의 지적처럼 나치즘에 대한 일상사 연구는 나치즘체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곧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으로 ‘일상사 연구가 지엽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그림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현재의 자신의 일상을 도덕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의식과 가치 지평을 확보해야 한다’¹¹⁾는 포이케르트의 지적은 일상사 연구의 철학을 웅변하고 있다. 이것은 나치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서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병직의 일상사는 성찰과 반성의 이름 아래 식민지배하의 친일문제를 대중의 책임으로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 식민지배 권력에 편입된 한국인 관료와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의 책임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집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찰과 반성은 모두의 몫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탄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조선일보의 친일 문제에 대해 굳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지식집단의 친일행위에 대해 적극 비판한 위에서 일상사의 전망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그 논의의 진정성과 엄격함이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배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를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삶이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체제 유지와 일상이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을 연결시켜 논리의

11)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2003,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8쪽.

비약을 범하고 있다. 삶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된다는 주장이 성립 가능한가. 설령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굳이 식민지배체제에만 적용될 사안도 아니다.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그 나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체제와 일상을 연결시키려면, 체제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려는가를 밝히는 과제가 요구될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와 식민지 인식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는 윤해동의 주장을 보자.¹²⁾

그의 글은 많은 시사점을 주긴 하나 매우 난해해서 우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매우 투박하게 친일문제에 대한 그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1) 식민지 주민의 일상 삶은 저항과 협력이 혼재하는 회색지대이다. 그리고 회색지대는 식민지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공영역이 위치하는 지대이기도 하다. 2)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친일문제는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도덕적 단죄라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협력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식민지배하의 모든 협력 행위는 적든 크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¹³⁾

나는 친일문제를 정치적 협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윤해동의 문제제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협력 개념을 통해서 친일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있을까. 친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윤리적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협력 개념이 제국주의의 지배구조와 식민지 주민의 대응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유효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를 협력이라 할 것이며, 자발성과 강제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협력이라 하더라도 그 유형은 행위의 주체자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르며, 책임 또한 다를 것이다. 모든 구조는 권력의 연쇄체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는 권력의 연쇄체계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위치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다르고, 책임 또한 다를 것이다. 공출을 독려하고 지휘한 군수와 말단에서

12) 윤해동, 1998,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일제하 공공성과 규율권력」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 2004, 「친일과 반일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기」 『우리 안의 이분법』, 생각의 나무.

13) '식민지 인식의 회색지대'와 식민지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는 인식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재의 문제이다. 그런데 윤해동은 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만일 후자의 의미라면 굳이 식민지에서만 회색지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공간이 회색지대일 수 있다. 적절한 개념이라 할 수 없다. 차라리 근대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공영역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식민권력과 식민 주민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성립되는 지대라고 말하는 것이 어 실제에 가깝지 않을까. 다만 식민지의 경우 식민권력의 주도성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집행한 면서기가 저야할 책임의 몫과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권력의 구조를 밝히지 않을 경우 친일 문제는 직접 동원된 사람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친일 문제는 친일의 구조-식민 지배체제 하에서의 협력구조-를 밝히는 일과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 두 가지가 함께 다루어져야 온전할 수 있다.

그런데 친일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책임이란 궁극적으로는 행위의 당사자가 저야할 몫이지,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저야할 주체들이 사라진 지금에 와서 친일파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현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야 한다.

Ⅲ. 친일청산 반대론 비판

친일청산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논지는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정치적 대중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비판한다.

1) 친일 진상규명은 사회를 분열시킨다.

친일문제는 이미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것을 덮어둔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드러내어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시점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에 있다. 즉, 친일문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을 하자. 갈등 해결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은폐하거나 힘으로 눌렀다. 이제는 새로운 경기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며, 이 경기에는 상호 존재(가치)의 인정과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상적인가. 현실은 이성이 개입될 여지도 없이 날카로운 적대적 대립과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대화의 소통도 막혀있다.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이 누려왔던 부당한 특권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개혁이라 한다면 친일 진상규명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특권화된 기억을 민주화하고 객관화시키는 일에 친일진상규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히 총력전이라 할 만큼 최대한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조중동과 문화일보가 연일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최근 지자체에서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대개 친일행위를 했거나 독재체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기념사업을 둘러싸고 지방차원에서 치열한 역사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전통적인 지방지배권력(문화권력)층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반대에 부딪혀 국고 지원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있어 기념사업이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권력의 민주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지배네트웍이 과거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역 단위에서 기억의 민주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념사업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마산 사례가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노산기념관과 조두남기념관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마산을 대표하는 문학관과 기념관을 짓기로 시와 시민단체와 학계가 중요한 합의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역문학관, 지역음악관 건립을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성과를 이후 부시장이 다시 부정함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고 있는 셈이다.

2) 민간연구소에 맡기자. 또는 사회에 맡기자.

이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의 주장으로 국가책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과거청산을 최소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생략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기억화를 부정하는 학자층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중에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근대국민국가가 기억(역사)에 대해 전유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억압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기억을 전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은 기억의 주체로서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기억의 주체가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억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시다가 말한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론에 동의한다. 그는 기억을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의 의미 또한 규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집합적 기억과 개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합적 기억은 일단 형성되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사회적 틀이 되어 개인의 사고를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집합적 기억, 즉 지배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대항적인 집합적 기억이든 집합적인 기억에 대해 끊임없이 개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집합적 기억의 주체를 단지 유기적 일체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집합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합적 기억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하자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집합적 기억에서 기억의 선택은 권력상황의 특성에 따라 강한 규정을 받는다. 그것은 집합적 기억의 주체, 즉 집합체 내부의 중앙과 주변의 관계에서나 그 집합체와 외부의 관계 모두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권력 상황에서 우위에 선 사람(즉 강자)들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선택하여 그것을 권력 상황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다.”¹⁴⁾

국가가 기억을 전유하기 때문에 국가의 기억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해체하지 않는 한 성립불가능하며, 또한 실천적이지도 못하다.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사는 한 집합적 기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보수세력이 집합적 기억의 상당부분을 독점하고 특권화한 것을 해체하고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즉, 한강의 기적에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난장이’에 대한 기억이 공존해야 한다. 근대여성교육의 선구자라는 김활란의 기억 속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학생들의 기억도 같이 공존해야 한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기억 속에 베트남주민의 고통과 고엽제 환자의 기억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사회의 자율성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곳곳에 보수세력의 권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기억의 재구성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환기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한 주체가 되어 역할

14) 石田雄, 2000, 『記憶と妄覺の政治學』明石書店, 머리말.

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국가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하나의 정치공동체라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무정부주의나 국가주의의 극단에 빠지지 않고 개선 가능한 제도로서의 국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족이지만 친일청산문제에서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즉 1948년 제헌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만든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주범이 바로 무장한 국가권력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가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으며, 그것은 당대의 국가가 져야 할 임무를 계승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물론 그 임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축소되었겠지만.

IV. 자성

1. 도덕적 우위에서 빚어진 오류¹⁵⁾

친일파 청산을 주장할 때 흔히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절대적인 선의 위치에서 친일행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는 '나중에 태어난 자의 특권'으로 앞시대를 비판하지 말자는 하버마스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즉 '내가 만일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엄정한 가능성에서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과거의 당사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도덕적 규탄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대적 정의와 동일시해서 선대의 잘못을 비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둘째, 집단적 죄(우리 모두의 책임)라든가 시대적 상황으로 책임을 돌리는 주장 또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죄는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당사자의 문제이고, 분명히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벌되거나 역사적인 책임을 추궁받아야 한다. 셋째, 과거의 정치적 판단상 범한 오류나 당시의 기회주의보다도 현재의 반성을 더 중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양심의 가책을 말한다.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부분은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의 실마리라는 것이 그의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문화이고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 테제는 나 역시 일제시기에 국내에 살았다면(역사적 조건) 친일파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주체의 행위)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

15) 김민철, 2002, 「친일파 청산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역사비평』 2002년 여름호

는 도덕적 심판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으며, 친일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베트남전의 양민학살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참전군인이었다면(역사적 조건) 나 또한 양민을 학살할 수 있었으리라는 가능성(주체의 행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친일파에 대한 잘못된 전제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친일파 문제를 도덕 차원으로만 한정, 도덕적 교훈 이외에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따라서 허무한 논쟁)

* 속마음까지 친일적으로 사고했으리란 인식(민족주의의 부작용, 식민지라는 역사적 조건을 무시, 친일파라 하더라도 민족차별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

3. 현재의 대결의식이 과거의 평가로까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경향 - 조선, 동아의 친일문제, 부당한 조선일보 공격(이봉창 의사가 아닌 범인이라는 기사 시비, 친일신문이었기 때문에 범인이라 했다는 주장, 현재의 비판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오류)

『삼천리』의 ‘김일성 匪徒’ 기사가 뜻하는 것

4. 해방 이후의 정치적 선택과 해방 전의 친일 문제를 연결하는 문제 : 진영론의 관점

도덕적 비난이나 폄하가 아니라 당대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정당한 평가와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역사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지식인이나 민족주의 우파의 경우 과거에는 민족주의자로 과대포장된 것을 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친일 문제가 전면에서 나서게 되어 오히려 그들의 역사적 역할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반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는 현재의 갈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들이 한 만큼의 평가와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 래야 비로소 대화의 소통이 열릴 것이다.

친일 문제와 현대사 : 친일파→친미파→분단·독재세력(산업화) 구조적·역사적 인식

① 친일문제→협력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묻는 문제,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작업

② 해방 이후의 정치투쟁→신념의 문제, 무엇을 선택했느냐의 문제. 이 과정에서

빛어진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할 것인가(계급적·이념적 증오의 시대)

친일파 문제도 국가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1945년 이전으로 끊어야 한다. 해방 이후로 연속시킨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좌파를 선택한 친일파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군과 경찰 문제는 물리적 폭력기구·수단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을 것이다.

V.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에서 기초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채택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게 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 후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을 크게 제한한 반면, 개정안은 선조사·후 반민족행위자 판정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다. 부역행위에 대한 조사만큼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등관(예: 군수, 경시, 소위) 이상을 모두 지위에 따른 지위범으로 포함시켰으며, 전국·중앙 등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역의 반민족행위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막았다. 또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에 대한 탄압도 병기하여 반민족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였다.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제3국(인)의 항일에 대한 방해나 탄압도 일제에 적극 협력했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반민족행위로 간주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문화·예술·언론·학술·교육·종교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민족행위자를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문화에 악영향을 끼친 부문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둘째, 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상조사→심의→의결'의 3단계를 두고 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현행이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최종 판정에 앞서 객관성

과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 반민족행위자 선정에 있어 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3로 함으로써 결정의 무게를 더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반일행적이 뚜렷한 자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부실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던 특위 위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취지를 살려 국회 추천과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은 정무급으로 보임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원회 업무의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변보장·보호에 관한 조항과 침해시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넷째,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소환에 불응하는 조사대상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자료협조 의무를 명시하였다. 특히 해외조사와 외국 소재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해외공관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성과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조사결과 얻은 성과물과 자료·물품 등을 보존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역사사료관의 건립과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

1)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준을 '행위'를 기본으로 하되 '지위'를 추가하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고등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행정관료), 소위(군), 경시(경찰) 이상을 지위에 따른 반민족행위자로 분류하였다. 고등관 이상 간부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했다고 판단된다. 즉 단순한 '생계형 친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지위에 따른 처벌 규정은 미군정기 입법의원이 제정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와 제헌의회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에서는 물론 4월 혁명 이후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서도 이미 언급되어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의 '나치즘 및 군국주의 청산법', 일본의 '공직추방령', 프랑스의 '국치죄 도입에 관한 1944년 8월 26일 명령', 중국 국민정부의 '처리한간조례(處理漢奸條例)' '징치한간

조례(懲治漢奸條例)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 2월 25일에 제정된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제4조(顯著한 反民主行爲 擬制)’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하여 9개항에 걸쳐 반민주행위자를 적시하였고, 이 법에 따라 624명이 자동으로 공민권을 제한당했다. 즉 해당되는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며, 이 가운데서 일부는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은 행위로만 책임을 물을 경우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고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 고문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문을 기획·명령한 것 이외에도 묵인·방조한 상급 간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권력의 위계체계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 추궁이다. 개정안에서 지위를 보완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바로 이런 철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의식하여 경찰 해당자를 축소하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경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식민지기의 경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1910년대 헌병경찰체제 하에서는 경시가 경찰서장에서부터 도경찰부장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으로 군인인 헌병이 치안 일선에서 후퇴하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문관경찰을 대폭 증원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대는 판임관이었던 경부가 대거 증원되면서 이들의 직급도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경부 중에도 고등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즉 1920년대 이후의 경부는 판임관급과 고등관급이 섞여 있다. 개정안에서 이를 세세하게 규정하려면 경찰의 경우 ‘경시와 고등관급 경부’라 하면 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경시라 예를 들었다. 따라서 고등관에 해당하면 경부라 해도 당연히 지위의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경부 이하 조선인 경찰 가운데 고등계 형사와 밀정 등은 직무 또는 행위상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업무상 다양한 민사기능을 가진 경찰을 일률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할 수 없다. 다만 조사와 심의 후 그 죄질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시라는 규정은 지위범으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하급 경찰에 대한 면죄부 조항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소위 이상 지위범 규정에 대한 논란을 검토해 보면, 일제하 군장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파시즘 전시체제 아래 장교는 그

권한과 위세가 지금에 비할 바 아니었다. 조선인 장교는 만주군관학교 또는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제를 위해 전공을 세워 출세를 하겠다는 적극적·자발적·직업적 친일행위자이며, 일본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정과 독립운동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국의 장교이기도 하였다.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황군 장교를 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키는 사안으로 시끄럽다니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문제가 된 헌병 오장(하사관급)은 고등계 형사나 밀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군과 경찰은 직업적 친일의 전형으로서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기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